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7

# 춘 천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8구합5572 징수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redacted]군수 |
| 변 론 종 결 | 2018. 11. 6. |
| 판 결 선 고 | 2018. 12. 18. |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159,200원, 취득세 가산세 3,596,340원, 지방교육세 855,920원, 지방교육 가산세 302,960원, 농어촌특별세 427,9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2,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7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9. [redacted]군 B 외 4필지 토지 총 33,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0,159,200원, 지방교육세 855,920원, 농어촌특별세 427,9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 고지를 하였고, 2015. 1. 22. 위 B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취득세 10,159,200원, 취득세 가산세 3,596,340원, 지방교육세 855,92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302,960원, 농어촌특별세 427,9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2,830원의 체납액을 2017. 5. 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 [redacted]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7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7. 6. 14.경 [redacted]군청을 방문하여 뒤늦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독촉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 사업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이 사건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2015. 1. 14. 취득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 최초 독촉 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독촉은 최초 독촉 이후의 반복된 독촉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독촉을 대상으로 그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7

**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가정적 판단**

보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독촉이 아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원고의 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

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하게 된다.

나)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당시 원고 대표자인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redacted]시 [redacted]구 D아파트, E호(우편번호 F)'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4. 12. 19.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위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2017. 6. 14.경 평창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주이자 대표자 누나인 G이 2017. 4. 7. 피고에게 분납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 1. 22. 이미 이 사건 토지에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7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살펴본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2014. 11.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14. 11. 17.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한 사실, ③ 피고가 2014. 11. 19. 원고 대표이사인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H아파트, I호'에 등기우편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16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통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2014. 11. 19.자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7

판사 류하나

판사 문지용